

사회적협동조합의 주사업

2021년 협동조합 전문상시상담기관(법무·법률) 법무법인 더함

사회적협동조합은 「협동조합 기본법」 제93조 제1항 각호에 따른 사업 중 하나 이상을 주사업으로 수행하여야 하며, 주사업은 전체 사업량의 40% 이상이어야 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93조 제2항). 주사업의 유형은 (1) 지역사회의 재생, 지역 경제의 활성화, 지역 주민들의 권익·복지 증진 및 그 밖에 지역 사회가 당면한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사업, (2) 취약계층에 복지·의료·환경 등의 분야에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3)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 (4)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5) 그 밖에 공익증진에 이바지 하는 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은 지역주민들의 권익·복지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협동조합이므로, 주사업의 수행은 그 목적 달성에 있어서 필수적이며 조합의 활동이 설립 취지에 맞게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평가하는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9월 이슈사항은 사회적협동조합의 주사업에 관한 법리를 소개합니다.

1. 사회적협동조합의 주 사업을 변경하는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사회적협동조합의 주 사업은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동법 제9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주 사업을 변경할 경우 ① 정관 변경에 관한 총회 결의를 거치고 ② 주무관청에 정관 변경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동법 제86조 제3항).

① 정관의 변경을 위한 총회 결의는 총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합니다(동법 제29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92조).

② 총회의 결의를 거친 이후에는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22호 서식 (정관변경 인가신청서)에 (1) 정관 중 변경하려는 사항을 적은 서류(신구대조표 등) (2) 정관의 변경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 사본을 첨부하여 기재부 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정관 변경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동법 시행규칙 제16조).

또한 조합의 ‘목적’은 등기사항이어서 현재 사회적협동조합의 등기부등본 상 기재된 ‘목적’에 주 사업에 관한 내용이 표기되어 있다면 변경등기가 필요할 것입니다.

다만, 주 사업이 변경될 경우 조합의 설립 목적 자체가 변경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으므로 사전에 주무관청에 이 같은 변경이 가능한지 사전에 협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사회적협동조합의 주사업이 전체 사업량의 40%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어떤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나요?

사회적협동조합은 「협동조합 기본법」 제93조 제1항 각호에 따른 사업 중 하나 이상을 주 사업으로 수행하여야 하며, 주 사업은 전체 사업량의 40% 이상이어야 합니다(동법 제93조 제2항). 사업량의 40% 이상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기획재정부장관의 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동법 제111조 제2항 제2호), 사회적협동조합이 제93조에 따른 주 사업을 1년 이상 계속하여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시정조치명령을 받거나 설립인가가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동법 제111조 제3항 제3호 및 제112조 제1항 제1호).

3. 임원의 과실로 인해 사회적협동조합의 주 사업이 전체 사업량의 40%에 미치지 못하게 되었다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행하여야 하는데(「민법」 제61조), 이를 선관주의의무라고 합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의 임원은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사회적협동조합에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92조 및 제39조 제2항). 다만, 판례에 따르면 이사의 경영판단은 선관주의의무에 따라 충분한 정보에 기초하여 합리적으로 내려진 것으로 추정되며, 회사가 그 손해의 책임을 이사에게 묻기 위해서는 회사 측이 이사의 선관주의의무 위반을 입증하여야 합니다(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다30465,30472 판결 참조). 따라서 귀 조합이 주 사업량 미달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사실이 있고, 그 손해에 있어 임원에게 일정한 책임이 있다면 그 선관주의의무 위반을 입증하여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주 사업량 미달이 정관 등 내부 규정으로 정한 임원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면, 임원에게 정관 등 관련 규정으로 정한 바에 따라 징계를 내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